



## 미국 법무부

민권국



## 미국 교육부

민권담당실  
법무담당실

2011년 5월 6일

동료 여러분께:

연방법 하에서, 주정부 및 지역 교육 기관(이하 "학군")들은 모든 아동들이 초등 및 중 고등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실제 또는 인식에 근거한 인종 또는 이민 상태로 인해 학생의 참여를 억제하거나 저해하는 또는 배척을 초래하는 학생 등록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은 연방법에 위배됩니다. 미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발송하는 본 서한은 여러분들이 해당 학군 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연방 차원의 책임이 있으며, 당국이 이와 같은 법의 준수 보장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1964년 민권법의 제4장 및 6장을 포함해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많은 법령을 집행합니다. 제6장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 여러가지 요인에 근거한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의 차별 대우를 금지합니다. 연방 법령 제42장 2000c-6항 참조. 제6장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군의 인종, 피부색, 국적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금지합니다. 연방 법령 제42장 2000d항 참조. 뿐만 아니라, 제6장 규정은 학군이 부당하게 특정인들이 인종, 피부색, 국적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받는 효과가 있거나 또는 특정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효과가 있는 기준 또는 관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연방 규정 제 28장 42.104(b)(2)항 및 제34장 100.3(b)(2)항 참조.

또한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82년 *Plyler v. Doe* (457 U.S. 202) 사건의 판결에서 주정부는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공교육 권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무고한 아동"의 공교육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무력한 신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소외된 계급의 아동에게 일생 동안의 고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은 시민의 제도적 구조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며, 미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조차 배제하는 것입니다." *Plyler*, 457 U.S. 223 참조. *Plyler* 사건에서 분명히 밝혀졌듯이, 학생(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정식 이민 서류가 없는 또는 비시민 상태는 학생이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연방 민권법을 비롯해 대법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분은 반드시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에 근거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생의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에 근거해 학생이 초등 학교 및 중 고등학교 수준의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군은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에 근거해 공립학교의 입학에 거부하거나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의무에 부응하도록 돕기 위해, 아래에 허용될 수 있는 등록 관행의 실례를 비롯하여 학생의 입학에 거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는 정보의 실례를 제공합니다.

학군은 학군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한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해당 학군 내에 거주한다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례, Martinez v. Bynum*, 461 U.S. 321, 328 (1983년) 참조.<sup>1</sup> 예를 들어, 학군은 거주 입증에 위해 전화 요금 및 수도 요금 청구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의 등록을 학군내 주민들로 제한할 수 있지만, 학생의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학군내 거주 입증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학군은 학군에 위임된 최저 및 최고 연령 요건에 부응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출생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외국 출생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학교 등록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군은 전체 학생의 인종 및 민족성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 연방 차원 및 일부 경우 주정부 차원의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교육부는 학군이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요청을 하지만, 학군은 이와 같은 정보를 사용해 학생들을 차별 대우할 수 없으며, 자료 요청에 대한 학부모나 보호자의 거절을 이유로 학생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학군이 학생의 등록시 학생 신분 확인번호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의 사회 보장 번호를 요청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군은 학생이(또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학생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방 법령 제5장 552a 항 참조(주해)*.<sup>2</sup> 사회 보장 번호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학군의 경우 학생에게 번호의 공개가 자발적인 것임을 통보하고, 번호를 요청하는 법적 또는 기타 근거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번호의 사용 목적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음*.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모든 정보 요청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학생 그룹에 선택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 사항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Brown v. Board of Education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347 U.S. 483 (1954) 사건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교육의 기회가 거부된 아동이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493항과 같음. 법무부와 교육부는 상기한 연방 민권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모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sup>1</sup>흔히 무숙 아동 및 청년은 거주지 증명 또는 출생 증명서 등 일반적으로 학교 등록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음. 무숙 아동을 위해 선정된 학교는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통상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즉시 등록시키도록 해야 함. 연방 법령 42장 11432(g)(3)(C)(i)항 참조.

<sup>2</sup>연방법에는 이 요건에 대해 제한된 특정 예외 사항이 있음. 간행물 L. 93-579 7(a)(2)(B)항 참조.

제공되도록 전념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즉각적인 조치로서 해당 학군이 학교 등록과 관련해 요청하는 증거 서류들을 재검토하여 이와 같은 서류들이 학생들의 등록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도록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법규 준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정부 및 지역 차원의 등록 자료들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학군이나 학교에서 특정 학생 그룹의 등록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학생 그룹의 출석에 장벽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연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877) 292-3804 또는 이메일 주소 [education@usdoj.gov](mailto:education@usdoj.gov)를 이용해 법무부, 민권국, 교육 균등 부서로, 또는 전화번호 (800) 421-3481 또는 이메일 주소 [ocr@ed.gov](mailto:ocr@ed.gov)를 이용해 교육부 민권 담당실(OCR)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http://wdcrobcop01.ed.gov/CFAPPS/OCR/contactus.cfm>을 방문해 해당 지역의 민권 담당실(OCR)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공교육의 동등 권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웹사이트 <http://www.justice.gov/crt/edo> 및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index.html>을 방문하십시오.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어느 아동에게도 공교육이 거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

Russlynn Ali  
차관보  
민권 담당실  
미국 교육부

/s/

Charles P. Rose  
법무 담당관  
미국 교육부

/s/

Thomas E. Perez  
법무부 차관보  
민권국  
미국 법무부